

제2583호
2018.06.14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
편집인: 공 보 실 장 신 선 애
전화: 3396-4952
(<http://www.junggu.seoul.kr>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공 고

- 제2018-434호 :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2
- 제2018-437호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편입토지 등 출입공고 3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2 / FAX.(02)3396-9022/3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													
람													



공 고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-434호

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- 1. 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.9.6)로 정비구역 지정되어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132호 (2007.5.17.)로 변경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4호(2018.1.11.)로 변경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165호 (2018.5.24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(경미한변경) 지정된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 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- 2.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 등 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,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 (중구청 도심재생과, ☎02-3396-5775)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합니다.

2018년 6월 14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- 가. 사업의 명칭 :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- 나. 시행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47-1번지 일대
- 다. 시행면적 : 1,603.0㎡ (대지 1,399.4㎡, 정비기반시설 203.6㎡)
- 라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 - 성 명 : (주)교원구문 / 대표 장 평순
 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51
- 마.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40개월
- 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:별첨
- 사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 - 건축면적 : 928.02㎡ · 연면적 : 18,538.59㎡
 - 건폐율 : 66.32% · 용적률 : 926.01%
 - 층수/높이 : 지상17층, 지하6층 / 69.9M
 - 주 용 도 :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
- 아.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사항 : 별첨
- 자. 공람내용 : 장교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신청내용
- 차. 공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
- 카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75)
- 타. 관계도서 :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(생략). 끝.

●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 - 437 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편입 토지 등 출입 공고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7조(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) 및 제10조(출입의 통지) 규정에 따라 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·물건 및 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위해 타인 점유 토지 출입 통지가 있어 동법 제10조(출입의 통지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8년 6월 14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사업명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2. 사업시행자 : 더 유니스타제이차(주)
3. 출입목적 : 토지, 건물 및 영업권의 감정평가
4. 출입기간 : 2018.6.18.(월). ~ 감정평가 완료시까지
5. 출입내역 : 인현동1가 151-1번지 토지 및 건물(건물 내 영업장 출입 포함)
6. 근거법령 :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0조, 제11조 및 제27조
7. 문의전화 : 더 유니스타제이차(주) 담당자 김종영 ☎070-4405-5373
8. 기타
 - 가. 일출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·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음
 - 나. 사업시행자는 측량·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함
 - 다.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97조 제2호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.